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1. 대응방안 관련 고려 사항

▣ 문제된 당해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의 위험성 및 대책의 시급성

- 현직 법관의 의견은 어떠한 주제에 관한 것이라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그 주제가 법원 내부에 대한 비판이거나 정치적 주제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사법의 독립과 염결성에 중대한 위험이 될 가능성 있음

- 최근 이○○ 부장판사의 인터넷 익명 댓글 사건의 경우 인터넷 익명 댓글 자체만으로는 법관의 글임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국에는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바, 이 사건 카페의 글은 구체적인 게시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 현직 법관이 쓴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카페의 존재 자체가 알려질 경우 언론 등을 통하여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재 이 사건 카페의 운영 형태상 유출 위험성이 높음 →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탈퇴된다고 하나 퇴직 전 내용을 프린트해 두는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되는 이상 탈퇴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 있음(탈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 등 타 직역에 있는 사람이 계속하여 사법부 내부 정보 등을 쉽게 접할 가능성 있음)

▣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예상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의 필요성

- 이 사건 카페 이외에도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단

체 카톡방, 네이버 밴드 등)에서의 법관의 의견표명에 관한 문제는 점차 사법부의 독립과 염결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단순 친목 차원(사법연수원 동기 모임, 대학 동기 모임 등)의 소셜미디어 활용의 경우 사석에서 한 일상 대화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텍스트로 남는' 법관의 대화나 의견표명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석에서의 대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의를 요함

-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유사한 문제의 발생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방안의 마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법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방안

- 이 사건 카페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법관의 의견표명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과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칫 법관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음 → 종래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법관들의 반발이 있었던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법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관들이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하달식·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자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법관의 의견표명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

▣ 법관들의 건전한 의견표명, 비판 등을 수용할 대안적 공간의 마련

1) 예컨대, 미국연방대법원도 사법부 구성원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실명과 동일하게 규제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미국연방대법원 사이트 참조), 미국에서도 익명으로 SNS에서 대화에 참여한 법관(Shirley strickland Saffold)이 징계받은 사례가 있으며, 법관에 관한 것은 아니나 '미국 법무부'는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social media guidelines'를 하달하면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경우에도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음. 나아가 영국의 한 법원의 Senior presiding judge 역시 익명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당시 영국에서 큰 논란이 되었음)

- 법관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관이 사법부를 위한 건전한 의견표명과 비판 등을 할 아무런 통로가 없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 있음
- 규제나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법관이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어야 진정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2. 종전 보고서상 검토된 대응방안에 대한 私見

▣ 1안(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권유하는 방안)에 대한 私見

- 기 검토 내용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클지 의문일 뿐 아니라 운영진에 대한 권유 자체만으로도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이○○ 부장판사 사태를 계기로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운영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선배 법관이 주의 환기를 함으로써 자연스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안(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한 私見

- 기 검토 내용과 마찬가지로 신중함을 갖춘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활동할 선배 법관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선배 법관의 가입에 이러한 의도가 있다는 점이 혹여 알려질 경우 더 큰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3안(법관 전체에 익명글 관련 주의 공지를 하는 방안)에 대한 私見

- 현재 이○○ 부장판사의 사례로 인하여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동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 부장판사의 행동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내·외부적으로 논란

이 있는 상황에서(대법원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사직 의사를 수리하였음) 법원장님, 수석부장님이 의견을 밝히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과거 법관의 신분을 밝히고 SNS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한 일로 인하여 대법원이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일선 법원의 법관이 반발한 사례가 있었는바,[2] 법원장님이나 수석부장님이 주의 공지를 하달하는 형식은 신중할 필요 있음

▣ 4안(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私見

- 이○○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익명 활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 있으나,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에 대한 과거의 논란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법원행정처가 주체가 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앞서, 사법정보화연구회에 종전에 발간된 SNS 가이드라인(법관과 SNS, 대화를 시작하다, 2012년 발간)에서 깊이 논의되지 아니하였던 익명 활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 뒤 이를 계기로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한다면 법관의 반발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종합 검토 방안에 대한 私見

- 이○○ 부장판사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카페의 변화 추이를 계속 관찰한 뒤 법관의 인터넷상 익명 및 실명 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감함
- 다만, 현 단계에서 '3안'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97700

3. 대응 방안(私見)

▣ 단기 대응 방안 : 1, 2안의 결합 및 변형

- 현재 이 사건 카페에서 법관이 민감한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하여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및 근무시간 중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스스로 자정력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앞의 1, 2안을 결합한 다음과 같은 단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표현의 자유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큰 기본권으로서, 익명 게시판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그 표현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굳이 '선배 법관'을 확보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법관 중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이○○ 부장판사 사건을 통하여 법관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매우 조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함(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페이므로 위 글을 게시하는 법관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 → 위 글의 게시 자체로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나아가 운영진을 알고 있는 동료 및 선배 법관에게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운영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 환기를 시킬 필요 있음 → 그 경우 카페 폐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운영진 스스로 생활 정보 공유, 업무 처리 관련 노하우 공유 정도로 그 주제를 축소시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중·장기 대응 방안 : 3, 4안의 결합 및 변형

- 종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SNS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정하지 못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법관의 독립성, 염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법관의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것으로 보임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사법정보화연구회를 통하여 SNS의 익명 사용 문제 대하여 자율적으로 논의하여 볼 것을 요청할 필요 있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기에 앞서 법원장, 수석부장이 별도의 주의 공지를 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클 우려가 있는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4. 餘論 - 법관의 건전한 의견표명, 토론을 위한 공간 마련의 문제

▣ 필요성

- 이 사건 카페 개설은 법관 사이의 소통 공간, 법관의 의견 표명 공간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 현재 사법부에 대한 건전한 의견표명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함(현재 코트넷에 게시된 글이 거의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이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고려할 수 있는 방안

- **외부 서버(포털사이트 등)를 활용하는 방법 : 적절하지 아니함**

  - 법관이 나름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공간이 외부 서버(포털사이트 등)에 존재하는 것은 보안 문제상 허용되기 어려움

● **코트넷 '게시판'에 법관 전용 익명게시판을 설치하는 방법 : 사실상 곤란**

- 공공기관에 익명게시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익명게시판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화합을 저해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 그 후속조치에 더 난감함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코트넷에 익명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산 관리권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이상 법관들이 이를 충분한 의견 표명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법관만을 위한 익명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직원들 역시 익명게시판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검찰 역시 자체 개혁에 대한 검사와 검찰직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했던 익명게시판을 2012년 한 달 시범운영 한 뒤 폐지하였음(초기에는 중수부 폐지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그 이후에는 수뇌부 퇴진 등을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고 함)[3]

●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과의 대화 배너 신설 : 검토 가능**

- 익명으로 대법원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는 배너 신설 검토
-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대신, 익명으로 제도개선이나 제언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통로를 두고 있음. 제도개선이나 제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하고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에 대하여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법관이 대법원장님에게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는 배너가 신설된다면 사법부가 내부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

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9957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부담 없이 편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일선 법원의 법관들에게 대안으로 비추어지지 않을 가능성 있음

● **코트넷 '커뮤니티' 란에 '연수원 동기 법관 커뮤니티' 를 설치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 : 검토 가능**

- 법관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법연수원 동기인바(관심사도 대체로 유사하므로 상호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큼), 사법연수원 동기 법관들끼리 코트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여 줌으로써 의견 표명의 분출구를 마련하여 줄 필요 있음 → 동기 법관들만 볼 수 있는 공간일 경우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동기 법관 커뮤니티의 경우 실명 사용 게시판으로도 어느 정도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기 법관 커뮤니티에 한하여 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익명 게시판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 동기 법관 커뮤니티에서의 익명 게시판으로서 법원 내부의 민감한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혹 구성원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명예 훼손적 게시글이 등장하는 경우 커뮤니티 운영진을 통하여(1차), 코트넷 관리자를 통하여(2차)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정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시범적으로 1개월 정도 운영해 본 뒤 계속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